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p> <p>① (생   략)</p> <p>② 카드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u>발급</u>합니다.</p> <p>③ <u>갱신발급예정일전</u>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u>갱신발급예정일부터</u>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u>발급예정사실을</u>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u>갱신</u> <u>발급</u>하여 <u>드립니다.</u></p> <p>④ ~ ⑤ (생   략)</p> <p>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p> <p>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2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p>	<p>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유효<u>기한</u> -----</p> <p>-----</p> <p>-----</p> <p>-----<u>발급</u>하며, <u>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u></p> <p>③ <u>갱신발급 · 거절</u>예정일전 -----</p> <p>-----</p> <p>----- <u>갱신발급 · 거절</u>예정일부터-----</p> <p>-----</p> <p>-----<u>발급 · 거절</u>예정사실을-----</p> <p>-----</p> <p>-----<u>갱신</u> <u>발급</u> <u>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 (현행과 같음)</p> <p>① ----- 유효<u>기한</u>-----</p> <p>-----</p> <p>-----</p> <p>-----</p> <p>-----</p> <p>-----</p>

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7조(카드이용 정지,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8. (생략)

② ~ ⑥ (생략)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 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 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카드이용 정지·해지 또는 이용  
한도 감액)

① -----  
-----  
-----· 해지 또는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정지 및 해지의 경우  
3영업일 이내(사유 발생 후 발송기  
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한도감액  
의 경우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드립  
니다.

1.~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  
-----  
-----  
-----  
-----  
-----  
-----  
-----

-----매출전표-----  
-----· 카드이  
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내가맹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 ③ (생략)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을 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

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 "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②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

③ 카드사는 -----

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과 전화,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에 증액합니다.

④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⑤ (생략)

제11조(할부구입)

① ~ ⑤ (생략)

⑥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① (생략)

1.~ 5. (생략)

<신설>

② (생략)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1가지 -----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④ -----

-----<단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할부구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하 삭제>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현행과 같음)

1.~ 5.(현행과 같음)

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금액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할부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 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5.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③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현금서비스)

①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

제13조(할부항변권) ① -----  
-----  
-----  
-----  
-----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1.~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 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로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③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대금 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15조(카드론)

① ~ ② (생략)

제16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③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삭 제>

<삭 제>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

하나, -----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 (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서면, -----

-----

-----

-----

-----

-----

변,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따라-----  
-----  
-----  
-----

④ -----  
-----  
-----  
-----  
-----

----- 6개월 전부터 매월 -----  
-----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카드사가 본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유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의는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



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 설>

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신 설>

②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신 설>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 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사

<신 설>

<신 설>

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신 설>

2.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신 설>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신 설>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신 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SMS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①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신 설>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신 설>

④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신 설>

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신 설>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신 설>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신 설>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① 제22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회원의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카드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회원에게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

<신 설>

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24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 설>

제25조(대출기간 연장) 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카드사는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카드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4장 대금결제

제5장 대금결제

제17조(대금결제) ① ~ ③ (생략)

제26조(대금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④ -----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⑤ (생략)

⑥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 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  
-----  
--(제28조-----)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 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⑬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18조(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1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 ④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  
-----

제27조(자동이체결제) ① -----  
----- 제26조의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7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로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9조(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카드이용이 정지(일시정지 및 제7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신설>

⑤ 제26조 제1항의-----  
-----  
-----  
-----.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  
-----  
-----  
-----.

1. -----  
----- (제7조제2항의 정지 및 제7조3항에 의한 일시정지인 경우는 제외)-----

2. (현행과 같음)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5.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6. -----  
-----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

제20조(회원의 책임)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  
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  
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  
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  
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9조(회원의 책임) (현행과 같음)

제6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30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  
빙))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  
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  
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  
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  
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  
니다.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카드  
사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  
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  
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  
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  
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  
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  
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  
소결제비율은 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

<신 설>

됩니다.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신 설>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신 설>

②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신 설>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 설>

제32조(적용 대상)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회원의 이용실

<신 설>

<신 설>

<신 설>

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카드사가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33조(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②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신 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 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 설>

제34조(결제금액)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신 설>

1. 최소결제금액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신 설>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신 설>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신 설>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신 설>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 설>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 설>

④ 제3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유선 등으로 고지합니다.

<신 설>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 설>

제35조(수수료율 등)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신 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신 설>

제36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21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 ⑤ (생략)

제22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여야 합니다.

제37조(계약해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2.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3. 제28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38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단

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4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 ④ (생략)

제23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생략)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제25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  
-----제41조에 따릅니다).-----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현행과 같음)

제41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  
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  
-----  
-----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42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 ④ (생략)

제26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 ② (생략)

제7장 보칙

제27조(위반할 경우 책임) (생략)

제28조(변경승인 등) ① (생략)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 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통지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장 보칙

제44조(위반할 경우 책임) (현행과 같음)

제45조(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카드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카드사가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3.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유선,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신 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 설>

제29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이하 신설>

제30조(관할법원)

① ~ ② (생략)

④ 제2항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광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분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경과 조치)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  
-----.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48조(관할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